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
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인영 (통일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 생상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8395호. 2021. 8. 17. 공포, 2022. 2. 18. 시행)됨에 따라,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또한,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11. 10. ~ 12. 20.) :

3) 행정규제 :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”을 “법 제17조의5제1항”으로 한다.

- ① 법 제17조의5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1년 이상 월 평균근로자 수의 5퍼센트 이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는 경우를 말한다.

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출산 또는 병역의무 이행”을 “출산, 병역의무 이행, 장애 또는 학업”으로 한다.

제43조 중 “반기별로”를 “반기별로, 매 반기 말의 다음 달 20일까지”로 한다.

제4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의5(남북통합문화센터의 운영)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 통합 및 인식개선을 실시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주민의 소통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49조제4항제5호의2를 제1호의2로 하고, 같은 호(종전의 제5호의2) 중

“제35조의5”를 “법 제17조의5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48조의5에 따른 남북통합 문화센터의 운영 업무 중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⑦ 제2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임 받은 업무 중 일부를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.

제49조의2의 제목 “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”를 “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”를 “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”를 각각 “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”로 한다.

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의3(정보시스템의 구축)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장의 관리·보존 및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·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5조의5(우선 구매) ① 법 제17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(이하 “모범사업주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로 한다. 1. 연간 평균 5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 2. 1년 이상 월 평균근로자 수의 5퍼센트 이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 ② 법 제17조의5에 따라 생상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모범사업주는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③ · ④ (생략) 제40조의2(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지급 등)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경제활동상태, 자산형	제35조의5(우선 구매) ① 법 제17조의5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1년 이상 월 평균근로자 수의 5퍼센트 이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는 경우를 말한다. ② ----- ----- ----- ----- 법 제17조의5제1항 ----- ----- -----.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 제40조의2(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지급 등) ① ----- ----- -----

제49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~ ③ (생략)

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한다.

1. ~ 5. (생략)

5의2. 제35조의5에 따른 모범사업주의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신청서 접수

6. ~ 11. (생략)

⑤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지원하는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49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1의2. 법 제17조의5 -----

6. ~ 11. (현행과 같음)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48조의5에 따른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⑦ 제2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임받은 업무 중 일부를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.

제49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① 통일부장관(제49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, 국가정보원장 또는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~ 11. (생략)

② 지역적응센터는 법 제15조의 2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③ 재단은 법 제30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

제49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-----

----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-----
-----.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-----
-----.

③ -----
----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-----

처리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<신설>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49조의3(정보시스템의 구축) 통
일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
등록대장의 관리·보존 및 영
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
호대장의 작성·관리 업무의 효
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
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통일부 정착지원과	
연 락 처	(02) 2100 - 5923